

데이터베이스에서의 기사데이터수정의 문제점

赤尾光史

이 글은 일본신문협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연구」 1995년 1월호에 실린 赤尾光史(일본신문협회 연구소 연구원)의 데이터베이스에 실린 기사 데이터 수정문제점을 번역한 것이다.편집자 주

1994년 10월 28일 일본신문협회는 「보존용 지면의 구축과 이용」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가졌다. 이 토론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신문사에는 극히 대량의 자료가 축적·보존되어 있다. 신문원지, 오려 붙인 자료, 마이크로필름, 축쇄판 등의 인쇄물 또는 그것을 광학적 수단에 의해 별도의 매체에 재제한 것이 있는가 하면 광파일 등 전자매체에 축적된 것도 있다. 형태는 다양각색이나 기사를 집필함에 있어서는 그 유용성이 유감없이 발휘되어 때로는 요청에 의해 신문사 외부에도 이들 자료를 제공하는 일이 적지 않다. 한편 신문의 전달 정보는 신속성이 중요시 되는 속성도 있고 해서 사람의 이름이 틀린다든가 사실관계를 잘못 쓰는 등 과오를 범할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러한 경우 가급적 조속히 지면에 그 잘못을 정정해야 함은 물론 이미 축적·보존되어 자료화 되어있는 과거의 지면에도 동시에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요청될 수 있다. 이러한 요구를 하게 되는 이유는, 잘못된 기사를 잘못된 줄 모르고 그대로 자료로 사용하여 또 다른 새로운 기사를 작성한다면 똑같은 잘못을 재생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잘못된 그대로의 기사를 외부에 제공한다면 뜻밖의 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신문사가 이러한 지면의 정정에 수반되는 다른 매체에의 조치(다소의 위화감은 있으나 이를 우선 「메인テナンス」로 부르기로 하자)를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이번 토론회의 목적이 있었다. 이 문제에는 다소 생각하는 바도 있어 토론회 사회를 맡아본 입장에서 두세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주제는 이날 토론회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논의된 또 하나의 매체, 즉 기사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사안으로 했으며 논점은 불법행위의 가능성에 두었다.

1. 메인テナンス(maintenance)의 방침

신문기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당초 기자의 기사집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둔 이른바 편집지원의 형태로 1970년대로부터 시작되어 그 후 급속하게 발전, 1980년대에는 이를 상용화(상용화)하는 회사가 나타나 기까지에 이르렀다. 그 동안의 컴퓨터·통신기술기의 눈부신 발전을 배경으로 각 신문사가 고도의 CTS에 뜻을 두게 된 것이 기사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가속화시켰음은 두 말할 필요조차 없다. 일본신문협회

교육문화부의 조사에 의하면 상용(상용)의 기사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1994년 4월말 현재 20개사이다. 계획중인 회사도 상당수 있어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은 신문계에서 상당히 높다. 멀티미디어를 의식하여 텍스트데이터베이스에서는 지면의 취급이라든가 「분위기」를 모른다는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사를 CD-ROM에 수납한 「전자축쇄판」을 공공도서관등에 제공하는 패키지 형의 데이터베이스도 이미 존재하고 있다. 장래에는 CTS와 연동시켜 기사를 이미지로 집어넣어 검색기능도 부여하여 신문 그대로의 형태로 화면에 표시토록 하는 온라인서비스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기사정정과 그 후의 데이터베이스상의 메인テナンス가 실제로 어떠한 방침으로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 강좌에서 패널리스트로 참여한 2개사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 2개사는 요미우리신문과 산경신문이다.

요미우리신문의 기사데이터베이스는 ① 오보를 계속·반복시키지 않는다. ② 보도에 의한 잘못된 사실인식을 확산시키지 않는다. ③ 보도에 의한 인권침해가 있으면 그것을 계속·확산시키지 않는다는 세가지 점을 방침으로 삼고 있다. 이 방침에 따른 메인テナンス의 기본원칙은 기사데이터베이스를 우선 「사료」로 규정해놓고 ① 텍스트는 게재지면과 동일하게 한다. 다만 글자의 종류나 글자의 체는 바꿀 수 있도록 한다. ② 기사타이틀은 독립정보로 받아들여 경우에 따라서는 수정한다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오보를 지면에서 정정한 경우 정정 후의 정확한 기사는 물론 정정 전의 오보기사에 대해서도 검색이 가능하나 이 정정 전의 기사에는 「속보주의」라는 문자를 기사머리에 붙여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기회사의 기사가 명예훼손 등 소송의 대상이 되어 패소의 결과가 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전의 관련기사 모두에 대해 「속보주의」를 붙이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산경신문은 이것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① 허보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한다. ② 단순미스, 혹은 차별적 표현은 원래의 기사에 수정을 가한다. ③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원인이 된 원래의 기사 그 자체는 데이터베이스에 남겨두고 그 기사에 패소한데 관한 주석을 달아둔다. ④ 억울한 죄에 대해서는 확정된 단계에서 과거의 피의자·피고인명을 익명으로 바꾼다. ⑤ 밝혀지는 것이 인권과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범죄피해자명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익명으로 한다는 등 구체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

2. 인격권과 관계되는 불법행위의 가능성

두 신문사간의 이러한 차이는 기사데이터베이스를 요미우리신문과 같이 「사료」로 규정함으로써 그 기본적 성격을 지면과 동일하다고 보느냐 혹은 산경신문처럼 지면과의 동일성에 구애 받지 않고 유연한 수정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어느 한쪽이 옳고 어느 한쪽이 그르다고 할 수 없으며 두 신문사가 각각의 견식에 따라 취한 조치이기는 하나 다만 기사데이터베이스를 법의 필터에 걸었을 경우 그 취급방식에 미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을까. 매스미디어에 비판적인 사회상황, 혹은 매스미디어를 피고로 한 소송에서의 사법판단의 경향 등을 감안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수룩한 기사가 권리침해로 단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아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기사데이터베이스에서 특히 고려되지 않으면 안될 것은 역시 명예나 프라이버시 등 인격권에 관계되는 불법행위의 가능성일 것이다. 여기서는 「억울한 죄」라는 케이스를 상정하여 그것과 관련되는 명예훼손의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재판에 의해 억울한 죄가 확정된 다음 자신을 범죄자 취급한 사건발생 당시의 보도기사를 다시 점검한 당사자가 보도에 의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는 이유로 신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한 사례이다.

이러한 케이스로 제소되는 원고의 청구는 현재 사죄광고의 게재와 위자료의 지불 등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떠한 것인가 사회의 고도의 정보화는 사회적 평가 저하의 원인이 되었던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라고 하는 청구가 늘어나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경우 대상이 되는 것은 「전자촉쇄판」의 온라인서비스가 상정되는 장래는 모른다 하더라도 현 상황에서는 적은 부수의 인쇄매체인 지금의 촉쇄판보다는 역시 데이터베이스가 될 것이다. 데이터베이스로부터의 삭제, 혹은 실명으로부터 익명으로의 수정이라는 원고의 청구도,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필자가 알고 있는 한 현 단계에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으나 이에 유의하여 마땅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두고 싶다. (다만 1994년 4월 22일 횡연지방법원 판결은, 기사가 명예·신용 등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베이스의 해당기사에 부기하라는 청구에 대해 「본건 각 기사에 의한 원고의 사회적 평가의 저하의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본건에 있어서는 이를 명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3. 기사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문제

기사데이터베이스와 명예훼손의 문제를 생각 할 경우 유의해야 할 요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둘째는 위법성 조각사유, 셋째는 데이터베이스의 가변성이다. 첫번째의 구성요건의 문제란 개개의 이용자의 검색이라는 능동적 작업에 의해서만 정보의 송수가 성립되는 형태의 미디어가 「공연성」이라는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지의 여부이다. 이에 대해서는 공연성을 부정해야 할 이유가 극히 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사데이터베이스는 인쇄매체로서의 신문이나 잡지, 혹은 방송 등의 매스미디어와는 달리 동보성이라는 성격은 갖고 있지 않으며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린 미디어보다는 정보입수에 상당한 정도의 액티브한 자세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미디어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 공연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공연성」에 관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라는 현재의 통설이나 이에 약간의 제한을 가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직접 적시」라는 이해에 따르더라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의한 정보제공은 결국 형법 제 230 조의 「공연사실을 적시하여」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두번째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해 검토해야 할 사항은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사실적시의 「공익목적」 성이다. 이 공익목적에, 적시사실의 「공공성」·「진실성 혹은 진실 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의상당성」의 두 가지를 합친 세 가지 점이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 조각사유임은 주지의 사실이나 특히 공익목적의 유무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 이유는 전적으로 기사데이터베이스라는 정보제공서비스의 성격 때문이다.

신문미디어가 100년 이상의 긴 세월에 걸쳐 만들어 온 이미지의 하나는 「사회의 공기로서의 존재」이다. 이러한 이미지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넘마조각처럼 이미 버려져 없어진 것도 아니지 않겠는가. 이러한 성격 때문에 명예훼손소송에 있어서도 신문에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사실적시 행위의 공익목적성이 인정되어 온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신문이 어떠한 사항을 기사화하는 행위의 목적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존재해 왔고 오늘날에도 존재한다고 생각된다(이 공익목적성에 대해서는 적시행위자의 주관적 동기보다는 행위양태의 시비, 즉 표현의 타당성 등에 구하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신문의 성격과는 보다 상업성이 높은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신문보도의 기록의 제공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가능하나 취재를 수반한 보도행위 그 자체가 아닌 이상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법원은 공익목적성을 신문과 똑같이 동렬에 놓고 보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가 성립될 가능성은 낮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번째의 데이터베이스의 가변성과 관련된 문제는 신문사측이 패소할 때의 케이스로, 데이터베이스로부터의 기사말소, 혹은 수정 등의 원고청구가 있었을 경우 법원은 데이터베이스의 가변성에 착안한 판단을 내리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사안이다. 사진주간지에 의한 초상권 침해사건에서 위자료의 지불과 함께 원고측이 내놓은 당해 사진게재지의 회수협력을 의뢰하는 신문광고게재청구에 대해 동경지방법원 1988년 6월 23일 판결은 위자료 지불에 대해서는 일부 인용했으나 게재지 회수 청구는 기각했다. 기각 이유는 「심히 실효성이 적으며 법적구제 방법으로서도 적절하거나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논리는 실효성이 있거나 하면 적절하고도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데이터베이스의 가변성의 높이는 위 케이스의 유추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닐까.

이전에 「인권면에서 본 기사데이터베이스」라는 글을 쓴 일이 있다 「종합저널리즘연구」 1992년 겨울호). 취지는 기사데이터베이스를 신문과는 기본적인 성격에서부터 다른 상업성이 높은 정보미디어로 규정, 필요에 따라 데이터를 수정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펴면서 수정에 따른 다섯가지 기준을 사안으로 제시한 내용이었다. 堀部政男 교수가 「데이터베이스로 전과와 관련된개인정보를 제공하면 불법행위책임을 추궁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정보의 전자화와 그 유통은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등 불법행위의 분야에 새로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기사데이터베이스를 이미 외부서비스하고 있는 회사를 중심으로 이러한 문제점의 제기에 관심이 높아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각사의 방침에 따라 데이터내용의 수정을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가 있을 것이다. 해답은 반드시 하나일 수는 없다. 다만 운용방법에 따라 때로는 불법행위책임을 추궁받을 가능성이 있다는것을 유의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